



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제1조(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)

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채 무 자	성 명 : 특에스대부(주)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<del>뽕은사도 57길 13, 5층 (프린트원센터)</del>
거 래 약 정	2018년 12월 일자 약정서
채 무 금 액	금 <del>육천팔백만</del> 원 ( <del>₩68,000,000</del> )
상 환 기 일	2019년 6월 일
이 자 율	연 11 %
지 연 배 상 금	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(24) %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.

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.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.

보증기간	2018년 12월 일부터 2019년 6월 일까지
피보증채무금액	금 <del>육천팔백만</del> 원 ( <del>₩68,000,000</del> )
보증의범위 (보증채무최고금액)	금 <del>팔천팔백사십만</del> 원 ( <del>₩88,400,000</del> )
연체이자율	
특약사항	

제2조(계약서의 교부) ①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서 및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,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서 및

